

한국원자력대상 운영규정

제정 2014. 03. 21

개정 2015. 03. 13

개정 2016. 10. 13

개정 2017. 10. 13

개정 2018. 10. 12

제 1 조 (목적)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우리나라 원자력 학문, 기술 또는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의 탁월한 업적을 기리고, 원자력계 종사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켜 원자력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원자력계 특별상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특별상의 명칭은 한국원자력대상(영문명: KNS Grand Award, 이하 “원자력대상”)이라 한다.

제 3 조 (포상 대상) 원자력대상은 원자력계 모든 종사자 중 원자력 학문, 기술 또는 산업발전(정책 포함)에 크게 기여한 개인(대한민국 국적자에 한함)의 탁월한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업적으로 다수를 수상자로 하는 경우 최대 3인까지 공동수상 할 수 있다. 다만, 기수상자는 포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4 조 (포상 내용) 원자력대상은 포상 이유를 명기하는 상패와 부상(상금 2,0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위 제 3조에 따라 공동수상하는 경우 분할 지급한다.

제 5 조 (재원) 원자력대상은 ICAPP2013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2억원과 그 과실금으로 운영하되, 향후 유사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 6 조 (시상 시기 및 장소) 원자력대상은 매년 학회 정기총회(추계학술발표회장)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상 강연을 진행한다.

제 7 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선정위원회는 포상 및 장학위원회(이하 포장위원회)가 매년 사회각계의 명망있는 인사들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12인을 선정하여 구성한다. 포장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12인에 포함된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제 8 조 (선정 절차 등) 원자력대상의 수상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거 선정한다. 다만, 추천이 없거나 심사 또는 확정 과정에서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상 후보자 추천 (매년 2월 중)
2. 포장위원회의 1단계 심사 및 3배수 이내의 수상 후보자 추천
3. 선정위원회의 2단계 심사 및 최종 수상 후보자(1인 또는 3인 이내의 공동수상자) 선정
4. 이사회 심의 및 확정

제 9 조 (수상 후보자 추천 등) ① 원자력대상의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학회 임원과 포상 및 장학위원회 위원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1. 본 학회 특별회원
2. 본 학회 정회원 3인 이상, 단 최소 3인의 추천인은 소속기관을 달리하여야 함.

② 수상 후보자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추천서류에는 다음 사항을 기본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후보자 인적 사항
2. 업적 명칭 및 추천분야. 단 추천분야는 학문, 기술, 산업 분야 중 택일하여야 함.
3. 추천 사유
4. 업적의 요약내용
5. 후보자의 공적조서 및 업적 증빙 자료

③ 학회 사무국은 포장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본 학회의 연구부회(이하 '해당 연구부회')에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고 적격하게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업적 검증을 의뢰하여야 하며, 그 이후 수상 후보자 업적 검증 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구부회장에게 일임한다.

④ 해당 연구부회는 학회 사무국이 지정한 기한 내에 수상 후보자 추천서류에 기재된 업적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상 후보 심사 등) ① 포장위원회는 후보자 심사 시 수상 후보자의 공적조서와 증빙자료, 해당 연구부회가 제출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상 후보자 추천분야의 적합성 및 제 1 조 (목적)에의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은 포장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여 3배수 이내의 수상 후보자에 대한 포장위원회 심사결과와 포장위원회가 제정한 선정위원회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1인 또는 3인 이내의 공동수상자)를 최종 수상후보자로 선정한다.

제 11조 (이사회 심의 및 확정) 이사회에서는 추천 및 심사과정의 적절성과 제 10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된 최종 수상후보자에 대한 적격성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한다.

제 12 조 (수상자 범위) 원자력대상은 산업계와 비산업계 인사를 교차로 선정한다. 산업계 인사는 통념적으로 산업계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했던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해석은 포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3 조 (준용 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회 포상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